

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의안 번호	4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1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군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기업경영 활력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·운영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(안 제3조)

- 군의 출연금
-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, 차입금, 용자상환금 등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
-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용자
-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다. 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5조)

- 조성된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함.

라. 용자금의 용도(안 제7조)

- 경영안정자금
- 기술개발자금
- 시설현대화자금
- 유통업 현대화자금 등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발췌

· 중소기업기본법

- 제3조(정부등의 책무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· 지방자치법

-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,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금의 설치)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 3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기금 운용 수익금
3.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, 차입금, 용자상환금 등

제 4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용자
2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 5 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) ①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

③용자금의 대출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 6 조(용자대상업체) 용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군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한한다.

제 7 조(용자금의 용도)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용자한다.

1. 경영안정자금
2. 기술개발자금
3. 시설현대화자금
4. 유통업 현대화자금

제 8 조(용자계획의 공고등)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용자신청)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용자대상자의 선정)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,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.

제 11 조(대상자 선정 통보)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사실을 통보한다.

제 12 조(용자조건)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별 용자금의 대출기간 및 지원한도액을 별표 1 과 같이 한다.

제 13 조(용자금의 금리등) ①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.

② 군수는 용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% 내지 5%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14 조(용자금의 상환) 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.

② 군수는 용자금을 용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2.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
3. 허위에 의하여 용자금을 용자받았을 때
4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15 조(변경사항 통보) 용자금을 용자받은 업체가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취급금융기관의 보고등) ① 취급 금융기관은 용자상환 및 기타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결산 및 보고)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 19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응 자 조 건 (제12조 관련)

세부사업명 및 용도	대출기간 (거치기간)	지원한도액	비 고
1. 일반운전자금	2년	1억원이내	
2. 기술개발자금	3년	1억원이내	
3. 시설현대화자금	3년	1억원이내	
4. 유통현대화자금 ○ 시장재개발자금	15년 (5년)	8억원이내	